

2021년도 1/4분기

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

2021. 4.

감사위원회

1. 개요

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
“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

보고 대상

- 기 간 : 2021. 1. 1. ~ 3. 31.(2021년 1분기)
- 대 상 :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(시장 핫라인) 및 오프라인
(우편, 방문 등)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

접수결과

- 2021년 1분기 총 133건 접수

[표 1] 2021년 1분기 창구별 접수현황

(단위 : 건)

접 수 창 구	합 계	1월	2월	3월
공직자비리신고	89	24	37	28
공 익 신 고	41	17	14	10
부 정 청 탁	3	0	1	2
퇴직공무원특혜	-	0	0	0
합 계	133	41	52	40

2.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

□ 제보 경로 분석

[표 2]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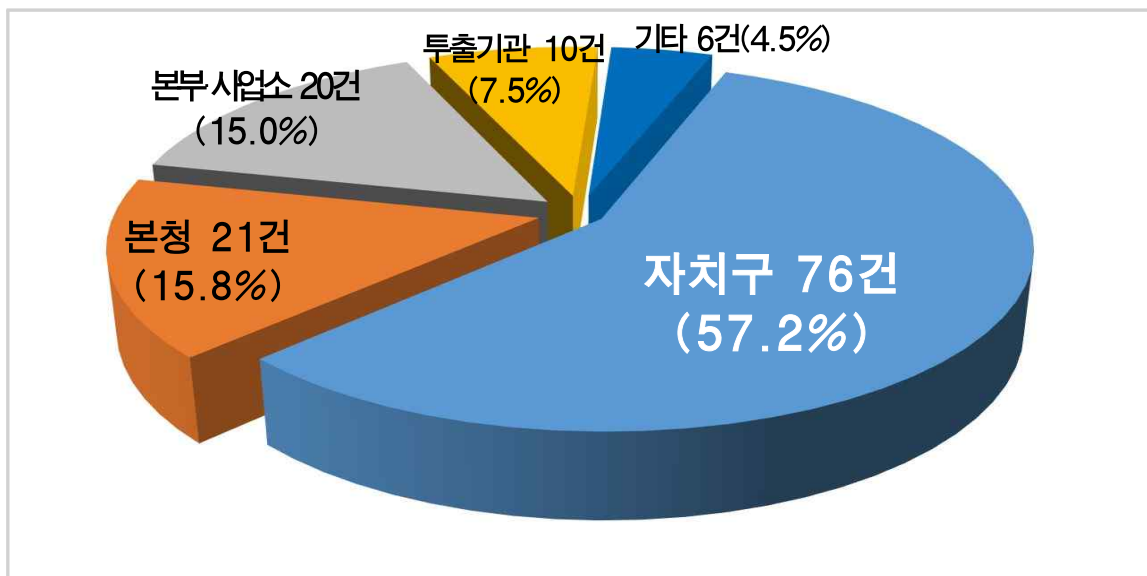
(단위 : 건)

경로	합 계	온 라 인 홈페이지/모바일	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	기 타 응답소/우편/방문/팩스
접수건수	133 (100%)	123 (92.5%)	4 (3.0%)	6 (4.5%)

*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

□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

-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76건(57.2%)으로 가장 많았음
 - 식품위생법,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26건
 -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등 50건
- 본청 소관 사무 제보 21건(15.8%), 본부/사업소 소관 20건(15.0%)
 -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5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16건
 - 본부/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 6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14건
-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10건(7.5%), 기타 6건(4.5%)
 -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1건, 공직자비리신고 등 9건
 - 기타 6건은 시 소관사무가 아닌 건



3. 공익제보 분류

□ 제보내용의 분류

○ 접수된 133건 재분류 결과,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10건

[표 3]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

(단위 : 건)

총계	공익제보 해당 110건		일반민원/기타
	부패신고	공익신고	
133 (100%)	71 (53.4%)	39 (29.3%)	23 (17.3%)

* 청원/제안/건의/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,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

※ 조례상 '공익제보' 해당 신고 범위

구 분	개 요	신고 대상 행위
부패 신고	부패방지법 제2조(정의) “부패행위”신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.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공익 신고	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(정의) “공익침해행위”신고	식품위생법, 의료법,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67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	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	공정한 업무수행, 부당이익의 수수금지, 업무숙지의 의무,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,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 위반 등

4. 공익제보 내용 분석

□ 공익제보 해당 110건 세부내역

○ 부패신고 해당 71건 세부 내용

[표 4]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분	소관기관	건수	내 용
부 정 청 탁	기 타	1	업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심
	소 계	1	
업 무 부 적 정	본 청	4	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/부주의 행위 관련 (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)
	본부·사업소	4	
	자 치 구	33	
	투자출연기관	5	
	소 계	46	
불 공 정 행 위	본 청	5	입찰이나 채용,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
	본부·사업소	4	
	자 치 구	7	
	투자출연기관	2	
	소 계	18	
복 무	본 청	1	초과근무/출장 부정행위, 직무 태만, 불친절,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
	본부·사업소	1	
	자 치 구	3	
	투자출연기관	1	
	소 계	6	
총 계		71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○ 공익신고 해당 39건 세부 내용

[표 5]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

(단위 : 건)

구 분	건수	소관기관	조치 상황	내 용
감염병 예방법	1	본 청	조치1, 해당없음1, 취하1	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
	2	자 치 구		
건설기계관리법	1	본 청	보완요구1	교량점검차 위반신고
건축법	3	자 치 구	조치1, 진행중2	건물 무단증축 신고 등
공유재산법	4	자 치 구	조치1, 진행중3	공유지 무단점유 등
도시정비법	8	자 치 구	진행중8	재개발조합의 불법행위 등
사회복지사업법	2	자 치 구	조치1, 권한없음1	복지시설의 직원의 불법행위
석면안전관리법	1	자 치 구	취하1	석면 피해발생 신고
소방시설법	5	사 업 소	조치1, 개선2, 진행중1 보완요구1, 취하1	소방안전점검 허위보고 등
	1	기 타		
식품위생법	2	자 치 구	해당없음1, 진행중1	위생불량업소 신고 등
아동복지법	1	사 업 소	진행중1	시설 입소아동 관리소홀
여객자동차법	1	자 치 구	개선1	마을버스의 난폭운전
의료기기법	1	자 치 구	개선1	의료기기 유사오인광고 신고
주택법	1	자 치 구	진행중1	부실시공에 따른 누수 발생
철도안전법	1	투자출연	취하1	철도종사자 직무교육 미실시
화물자동차법	1	자 치 구	진행중1	불법증차 및 보조금 부정수급
환경영향평가법	3	본 청	진행중3	환경영향평가 특혜의혹 등
총 계	39			

*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

5. 처리 및 조치 결과 (2021.4.8. 현재)

□ 처리 내역

[표 6] 접수제보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총계	처분 및 개선 26		종결 37			진행중	취하
	처분(조치)	개선 등	해당없음	권한없음	중복 등		
133	8	18	26	1	10	58	12

※ 개선 등 내역 : 구두경고, 주의촉구, 개선약속,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

※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, 필요 시 연장 가능

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제5항

□ 처분(조치) 내역

[표 7] 공익제보 조치 결과(요구 포함)

(단위 : 건)

번호	신고구분	신고 내용	처분기관	조치 내역
1	공 익	소방안전시설 부당 운영	사 업 소	과태료(50만원), 행정처분 사전통지
2	공 익	방역수칙 피트니스센터 신고	자 치 구	고발조치
3	공 익	사회복지시설 운영 부적정	자 치 구	개선명령
4	공 익	아파트 단지 내 도로사용료 무단징수	자 치 구	과태료(1,000만원)
5	공 익	건물 옥상 무단증축	자 치 구	행정처분 사전통지
6	부 패	협동조합의 정보 비공개	자 치 구	시정명령
7	부 패	구 문화재단 직원 채용절차 미준수	자 치 구	개선명령
8	부 패	용역업체 직원의 근무불성실 신고	투 자 출 연	해당자 주의, 업체 감점 등